



제 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54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	4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1
3. 주요내용별 검토	14
(1) 목적 및 정의 등	1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7
(3)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20
(4)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24
(5) 생활협동조합 제품 인증	30
(6)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	33
(7) 생산자협회 설립	35
(8) 감독 및 명령 등에 관한 사항	38
(9) 과태료 등	41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11. 14.

다. 회 부 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생 조합, 보건·의료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가공생산 또는 판

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7조).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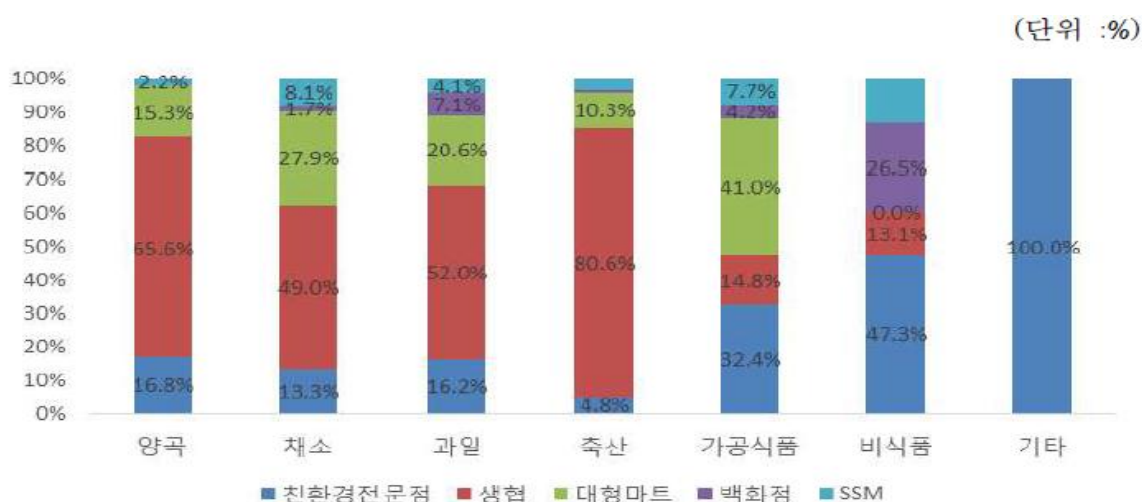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및 소비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품목별 유통경로 비중(2023) 】

(단위 : %)

구분	친환경전문점	생협	대형마트	백화점	SSM	합계
양곡	16.8	65.6	15.3	0.1	2.2	100.0
채소	13.3	49.0	27.9	1.7	8.1	100.0
과일	16.2	52.0	20.6	7.1	4.1	100.0
축산	4.8	80.6	10.3	0.9	3.4	100.0
가공식품	32.4	14.8	41.0	4.2	7.7	100.0
비식품	47.3	13.1	0.0	26.5	13.1	100.0
기타	100.0	0.0	0.0	0.0	0.0	100.0

* 주 : 금액 가중치 적용



※ 자료: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농림축산식품부, '24. 9.)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판매장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와 더불어 일반 농산물 대비 높은 가격에 따른 부담¹⁾ 등의 이유로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별 매출액 추이(인증품) 】

구분	업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 전문업체	친환경전문점 ²⁾	1,758	2,370	2,330	1,605	1,742	1,536	1,500
	생협 ¹⁾	3,997	4,181	3,827	2,875	3,139	2,728	2,300
	소계	5,755	6,551	6,147	4,480	4,882	4,263	3,800
대형 유통업체	대형마트	2,154	2,034	2,136	1,642	1,500	1,911	1,418
	백화점 ²⁾	1,014	699	629	429	437	366	366
	SSM	2,247	2,396	1,971	910	823	1,011	1,031
	소계	5,415	5,131	4,736	2,981	2,839	3,308	2,817
농협 등	로컬푸드직매장	235	432	521	714	897	401	426
	농협	250	255	1,011	70	68	54	48
	소계	535	687	1,532	784	965	455	474
온라인					491	1,457	1,832	1,874
합계		11,705	12,369	12,415	8,736	10,143	9,858	9,045

· 주 1 : 2018년부터 '우리 생협'을 생협에서 친환경전문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데이터 추이에 변화 발생

· 주 2 : 2020년부터 식품매장을 보유한 백화점만 포함하였으며,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의 식품매장인 '킴스클럽'은 SSM으로 집계함

※ 자료: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농림축산식품부, '24. 9.)

이는 단순한 개별 유통 조직의 위기를 넘어, 안정적 유통 판로를 잃은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생협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생협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지역 협동조합'과 그

1) 친환경농산물 비구매 이유 1위: 가격이 비싸서(65.1%),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농림축산식품부, '24. 9.)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 협동조합’, ‘의료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현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 254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총 7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분야별 생협 수				조합원 수	총 공급액	총 출자금
지역·단체	의료	대학	계			
119	102	33	254	1,838,428	9,761	2,601

* 직장과 단체는 지역생협에 포함하여 통계 작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상세 현황

(단위: 개)

구분	연합회명	설립연도	회원조합 수
지역	아이쿱생협연합회	1997	14
	한살림생협연합회	1986	27
	두레생협연합회	1997	24
	행복중심생협연합회*	1989	10
의료	한국소비자생협연합회	2011	53
	한국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9	9
대학	대학생협연합회	1989	33

*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누적된 적자로 파산절차 진행(파산 선고, 채권자집회 소집 등) 중이며, 연합회 소속 회원조합은 독자운영(5개), 파산(4개), 소속 연합회 변경(1개) 등 대응

□ 주요 생협 연합회 총 출자금 및 조합원 수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아이쿱생협 연합회	한살림생협 연합회	두레생협 연합회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대학생협 연합회
총 출자금	1,183.9	142.5	151.5	9.5	1.8
조합원 수	317,973	935,416	236,173	37,469	136,06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핵심 유통 주체인 지역생협을 ‘시장 감시 및 독점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농가 육성이나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지역생협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협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견²⁾은,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등 친환경농산물 관련 법령에는 생협 육성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이 생협을 친환경 농산물의 핵심 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실익이 크고,

생협은 단순한 소비자보호단체가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도농 교류를 통해 유기농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 한살림연합 등 의견제출

기여해 온 특수성이 있는 만큼, ‘시장 감시 및 규제’를 주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처의 업무 성격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생협은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비영리 원가 경영과 계약재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공공조달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왔는바, 공공기관 우선구매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투입된 공공 재정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로 환류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반면,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생협의 설립 인가 및 포괄적 감독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 및 지원 사무를 전담하게 될 경우,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규제(공정거래위원회)와 진흥(농림축산식품부)의 주무부처가 이원화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³⁾,

제정안의 국·공유 재산 특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예외적인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인 생협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대학생협이나 의료생협 등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

3) (농식품부)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이나 「벤처기업육성법」(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감독(인증·확인·취소)과 지원 사무를 동일 부처가 전담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있음. 제정안과 같이 단일 조직(법인)의 설립 인가·감독권(공정거래위원회)과 육성·지원권(농림축산식품부)을 이원화할 경우 정책적 비효율성 및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는바, 이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 무관한 영역으로 예산이 분산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타 농산물 유통 주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협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어 법률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협에 대한 지원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친환경농어업법」을 통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지원 시책과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점, 기존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및 현행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조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보다는 향후 「친환경농어업법」의 기존 조항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 관련 생협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제정안 및 친환경농어업법 중복 사항 】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	친환경농어업법	기존 법령 중복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친환경농업 육성계획(5개년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친환경농수산물, 가공품, 유기식품 등의 생산 유통 수출 활성화와 소비 촉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있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8조(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 위원회 등)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5개년계획) 수립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9조(실태조사)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 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가 있음
제10조(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 원 등)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보급 및 교육·지도·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가 있음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제55조(우선구매)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우선 구매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음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5조(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음
제13조(생활협동조합제품인증)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 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운영
제14조(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등)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근거가 있음
제15조(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설치 등)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제1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총 5장,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제1장에서 동 법률의 목적과 생활협동조합·농수산물 등의 용어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다음, 제2장에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기관 설치, 생산자협회 설립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등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생활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바지 등 입법목적 규정
제2조	정의	- 생활협동조합(농수산물·식품 취급), 농수산물, 식품, 생산자 등 용어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의무
제4조	생활협동조합의 역할 및 책무	- 농수산물 등의 안정적 공급, 도농 교류 및 지역균형발전 공헌 노력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체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근거
제8조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위원회 등	-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실태조사	- 정책 수립을 위한 2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 의무 및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제3장 생활협동조합의 지원		
제10조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	- 경영 등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시설비 용자 및 국·공유 재산 대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 국가·지자체의 우선구매 노력 의무 및 인증제품 우선구매 요청 권한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구매계획 수립, 이행 권고 등
제4장 생활협동조합 육성 기반조성		
제13조	생활협동조합제품인증	- 생협 취급 친환경농수산물 등에 대한 제품 인증제 실시 근거
제14조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정책 수립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5조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설치 등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제16조	생산자협회	- 생산자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생산자협회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제17조	포상	- 우수 생활협동조합 선정 및 포상
제18조	감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감독, 보고 명령 및 검사 권한
제5장 보칙		
제19조	권한 업무의 위임·위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및 협회 등 위탁 근거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의 생활협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제21조	과태료	-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 칙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에서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3. 주요내용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등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을 제시하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생활협동조합, 농수산물, 식품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직접 생산하여 생활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생협의 육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 권익’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생협을 ‘농업 육성 정책’의 참여자로 격상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지원 대상인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정의4)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과는 거리가 있는 대학 생협(학내 매점 등)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하는 의료생협 등도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인 ‘생활협동조합’의 정의를 친환경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 등으로 보다 명확화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제정안을 생협 육성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의 설립·운영·해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생협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제정안은 ‘농식품부 소관 생협의 육성·지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등 두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정안은 생활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의무를 명문화하고, 지원을 받는 생활협동조합에게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도농 교류 공헌이라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협동조합의 역할 및 책무) 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농 교류와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생협 지원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려는 취지로,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안 제10조(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 등의 근거가 되는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조제1항의 ‘종합적인 계획’은 안 제6조의 ‘기본계획’⁵⁾과

5)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3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활협동조합의 역할 및 책무(안 제4조)는 생협이 단순한 사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도농 교류’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적 결사체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생협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협을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정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협동조합 및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3. 생활협동조합 인력 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및 생활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5. 생산자 육성 및 지원 방안
6. 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먹거리 및 식생활교육 계획
7. 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 생활협동조합 판매장 설립 등 물류사업의 지원 시책
9. 생활협동조합 판매사업의 홍보 지원
10.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 구입·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11.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적·재정적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앞서 ‘정의’ 규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그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달성하기 위해 안 제4조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친환경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협동조합 및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3. 생활협동조합 인력 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및 생활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5. 생산자 육성 및 지원 방안 6. 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먹거리 및 식생활교육 계획 7. 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 생활협동조합 판매장 설립 등 물류사업의 지원 시책 9. 생활협동조합 판매사업의 홍보 지원 10.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 구입·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11.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

제 정 안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도별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현황과 성과분석
4. 시·도별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생활협동조합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제7조 및 제9조는 생협 육성·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하여 생협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과의 중복 및 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발전계획과의 병존에 따른 정책적 충돌 및 현장의 혼란 발생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⁶⁾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의 5년 단위 기본계획(안 제6조)을 수립할 경우 동일한 수범자(생활협동조합)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주기의 두 계획이 병존(並存)하게 됨.

이는 단순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넘어, 규제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경우 국가 정책 기조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두 계획 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상 육성계획 등과의 기능적·실질적 중복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어업법」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발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또한 동법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관련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⁷⁾.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른 주요 지원대상이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생협’임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안 제6조) 및 시행계획(안 제7조)의 내용은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실천계획에 포함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 방안’과 기능적·내용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입법 효율성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별도의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기보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실천계획 내에 ‘생협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우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 자문, 시설비 융자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조합이나 청년 구성비율이 높은 조합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활협동조합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생활협동조합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4.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6. 그 밖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

제 정 안

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생활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발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생활협동조합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안 제10조~제12조는 생협의 운영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자문, 시설비 융자 및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생협에게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생협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먼저, 안 제10조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⁸⁾에서 생협을 포함한 유통업자 등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제1항제4호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항 제5호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유재산법」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

리법」 10)의 예외로서, 이와 같은 특정 단체에 대한 포괄적 특례 부여가 타 유통 주체(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안 제11조, 제12조)와 관련하여 현행 「친환경농어업법」과 중복되는 측면과, 타 유통 주체와의 형평성 측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설립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제55조(우선구매)¹¹⁾는 이미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게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의 우선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지원대상인 생협이 취급하는 주력 품목이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친환경농수산물’임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라, 생협이 취급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할 경우 동일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다른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나 지역 소상공인,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들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2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소비자의 자주 · 자립 · 자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규정¹²⁾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¹³⁾하여 생협 사업의 ‘조합원 전속성’을 명시하고 있음.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 용역 · 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 · 자립 ·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생협은 본질적으로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를 위한 ‘민간 자조(自助) 조직’으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생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과 같이 법률로써 비조합원인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비조합원 이용 금지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는 생협을 조합원의 자발적 필요가 아닌 공공조달 시장에 의존하게 하여 동법상 핵심 가치인 ‘자주·자립’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우선구매 규정은 생협의 설립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협동조합 판매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는 공공 구매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됨으로써 일반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제한경쟁에 따른 가격·품질 경쟁 저하로 소비자 후생까지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5) 생활협동조합 제품 인증

제정안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생활협동조합제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생협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타 유통 채널과의 차별화를 통해 생협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안 제13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증의 실체적 내용(농약 잔류량, 재배 방법 등)은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 및 ‘무농약’ 인증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유기 인증 및 무농약 인증 비교 】

구 분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
일반기준	- 경영기록의 작성 보관 (최근 2년) -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병행불가 -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2년마다)	- 경영기록의 작성 보관 (최근 1년) -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병행불가 -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2년마다)
재배포장, 용수, 종자	- 재배포장 오염우려 없을 것 - 합성농약성분 0.01mg/kg 이하일 것 -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비옥도 관리 -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가 없을 것 재배포장은 처음 수확하기 전 3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칠 것(전환기간 동안 유기방식으로 재배) - 버섯류, 싹을 틔워 직접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 배지 - 합성농약성분 0.01mg/kg이하일 것 - 배지의 조성이 산림,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 (화학비료 성분 배지조성 불가) -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생육기동안 유기방식으로 재배된 것	- 재배포장 오염우려 없을 것 - 합성농약성분 0.01mg/kg 이하일 것 -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비옥도 관리 -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가 없을 것 재배포장은 전환기간 없음 - 버섯류, 싹을 틔워 직접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 배지 - 합성농약성분 0.01mg/kg이하일 것 -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한 번의 생육기동안 무농약 방식으로 재배된 것
재배방법	○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불가 ○ 돌려짓기(윤작) 필수 ○ 가축분뇨 퇴·액비는 유기축산농장, 경축순환농장, 무항생제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 사용, 합성농약은 사용불가 ○ 돌려짓기(윤작) 권장 ○ 가축분뇨 퇴·액비는 일반농장 유래한 것도 사용 가능
생산물 품질관리	○ 청결유지, 외부오염 방지 ○ 다른 인증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 병·해충관리를 위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비의도적 원인으로 합성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시 MRL의 1/20이하 이거나 MRL이 없는 경우 0.01mg/kg	○ 청결유지, 외부오염 방지 ○ 다른 인증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 병·해충관리를 위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비의도적 원인으로 합성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시 MRL의 1/20이하 이거나 MRL이 없는 경우 0.01mg/kg
기타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종자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 토양을 기반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 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물질도 투입이 금지됨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닐 것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가 유기 또는 무농약 ○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배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국내산으로 잔류 농약은 불검출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따라서, 이미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준과 내용이 동일한 ‘생협 인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품질 향상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전무한 채로, 인증관리 조직 신설 및 심사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도 유기농·무농약·GAP·HACCP·지리적 표시제 등 농식품 관련 인증이 복잡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인데, 여기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생협 인증’까지 추가될 경우 소비자는 이를 ‘기존 친환경 인증 보다 더 상위의 등급’으로 오인하거나 인증제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농 사과’를 생협에서 판매할 경우 ‘생협 인증’을 추가로 부여받고, 그 밖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할 경우 이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타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활협동조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4조(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생활협동조합 관련 정책 수립 및 통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제53조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판매), 인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

동 제정안의 지원 대상인 생협의 핵심 역할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촉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는 기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미 동일 부처(농식품부) 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구축비와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별도의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 및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제53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거나 해당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생산자협회 설립

제정안은 생협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연구, 교육·훈련 및 정책 건의 등의 업무 수행과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생협 사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16조(생산자협회) ①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협동조합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생산자 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5. 생산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농업 분야에는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 농업인의 권익 대변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및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활동 중에 있음.

【 농업 분야 생산자 단체 관련 개요자료 】

단체명	회원수(천 명)	설립 목적 및 역할
농협중앙회	2,060	회원(지역조합 등)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85	농촌지도자 권익 보호, 농업기술개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0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농업인 권익 신장
전국농민회총연맹	20	민족자립 근간 구축과 식량 주권 추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등이 결성되어 정책 건의, 교육·홍보, 판로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분야 단체 관련 개요자료 】

단체명	회원수(천 명)	설립 목적 및 역할
한국친환경농업협회	43	친환경농업 정책 개발,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한국유기농업협회	33	유기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교육 등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와 같이 이미 다수의 농업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16조제3항에서 생산자협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 ‘교육훈련’ 등은 기존 농업인 단체의 사업과 유사함에 따라,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및 단체 간 대표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생산자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생협과의 거래 관계에 특화된 업무로 제한하는 등 기존 단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감독 및 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생활협동조합 및 생산자협회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사업 현황 보고 및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8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협동조합 및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생활협동조합이나 협회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안 제18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생활협동조합 및 생산자협회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협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¹⁴⁾(감독 및 권한의 위탁)는 ‘생협’ 등에 대한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8조는 동일한 피규제기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이중 감독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부처 간 시정명령이나 유권해석이 상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생협의 정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¹⁵⁾에 따라 작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시·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에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성·인가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른 정관”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현황 보고나 장부·서류 검사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안 제18조제2항의 “정관의 위배 여부 등”을 삭제하고, 감독 대상을 일반적인 업무 전반이 아닌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 및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감독권과 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과태료 등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제20조를 위반하여 생활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생활협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공신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안 제2조제1호¹⁶⁾는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에 따라, 제정안의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활협동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을 말한다.

조합의 ‘부분집합’에 불과함.

그런데, 안 제20조는 “이 법(제정안)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농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의료 생활협동조합’이나 ‘대학 생활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므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명칭) 및 제88조(과태료)¹⁷⁾에 따라, 생활협동조합의 유사 명칭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별도로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생협을 사칭한 단체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

따라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안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의 처

02)6788-5426
